


# 공 지 사 항

배포일시	2017. 11. 28.(화)	 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
담당자	구광일 영사 (+977 1 427 0172)	

## 네팔 형사법 주요 개정 내용(종교 관련 사항)

1. 지난 10월 16일 네팔 대통령은 선교활동에 대한 구체 처벌규정을 담은 형사법(Criminal Code) 개정안을 재가하여 **2018년 8월 17일부터 발효**될 예정입니다.
2. 이와 관련, 네팔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**종교 관련 처벌규정**에 대해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o 네팔 형사법 제9장(종교 관련 위반)

[제155조] 카스트, 공동체, 민족 등의 종교와 종교적 신념에 대해 증오하거나 멸시할 수 없으며, 이들의 신성한 장소, 종교유적지, 사원, 묘지 등에 대해 의도적으로 훼손, 오염시키거나 피해를 입힐 수 없다

-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0,000루피(USD 300) 이하의 벌금
- 위반자가 외국인일 경우 징역 및 벌금을 납부 후 7일 이내 추방

[제156조] 카스트, 공동체, 민족 등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문자, 상징, 구두, 문서 또는 기타 다른 수단을 통해 위해를 가할 수 없다

-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과 20,000루피(USD 200) 이하의 벌금

[제157조] 오랜 종교적 전통에 대해 의도적으로 개입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

-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과 10,000루피(USD 100) 이하의 벌금

[제158조] 카스트, 공동체, 민족 등의 종교와 종교적 신념, 믿음을 바꾸도록 부추기거나 개종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

-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과 50,000루피(USD 500) 이하의 벌금

- 위반자가 외국인일 경우 징역 및 벌금을 납부 후 7일 이내 추방  
[제159조] 제158조의 공소시효는 6개월, 여타 조항은 3개월을 넘지 않는다

/끝/